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#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고단8245 판결 업무방해,모욕,공용물건손상

#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20고단8245 업무방해, 모욕, 공용물건손상

피고인 A

검사 최현철(기소), 오민재(공판)

판결선고 2021. 7. 7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# 이 유

범죄사실

#### 1. 업무방해

피고인은 2020. 11. 13. 03: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'C'에서 메뉴판에 없는 계란 후라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은 너 무바빠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나 "그럼 더 바쁘게 해 주겠다"고 말한 후 맥주를 가져다달라고 하여 가져다주면 이번에는 소주를 가져다달라는 식으로 계속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식으로 괴롭히고, 음식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버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.

## 2. 모욕

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을 향하여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"씨발, 좆도 경찰 씨발놈들", "순경 씨발놈들 가난한 새끼들", "200만 원 밖에 못 버는 걸뱅이 새끼들"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.

### 3. 공용물건손상

피고인은 2020. 11. 13. 05: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체포된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시가 미상의 대기석 의자 상단을 손으로 세게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I. D, J, K의 각 진술서
- 1. 각 수사보고
- 1. 각 고소장
- 1. 각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314조 제1항(업무방해의 점), 각 형법 제311조(모욕의 점), 형법 제141조 제1항(공용물건손상의 점)

1. 상상적 경합

형법 제40조, 제50조

- 1. 형의 선택
- 각 징역형 선택
-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 제1항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,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, 공용물건손상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,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### 판사 양은상